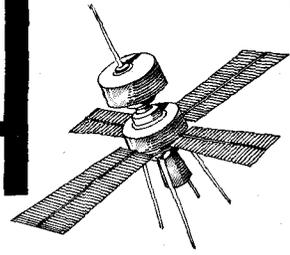


# 이달의

# 인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 생산자 자조금 제도

우리의 양계산업이 농가부업 형태에서 근대적인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되기 시작한지도 이제 4 반세기가 되었다.

그간 우리는 무엇을 하여왔으며 무엇을 하려고 하며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양계산업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양계선진국에서 잘 되어가는 제도가 우리는 왜 잘 안되는가? 우리의 당면문제들을 세월이 모두 다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

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 우리가 흥미를 갖는 일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아닌지?

사료를 20% 이상 DC 해주는 곳은 없는가? 3개월 이상 사료를 외상주는 곳은 없는가? 이번 행사에 스폰서는 누가 되어줄 것인가? 계란 닭고기 가격은 언제 변동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려면 한이 없고 글로 남길만한 것도 못되기 때문에 생략한다.

여하튼 우리는 작은 문제에는 흥미와 관심을 갖지만 실제 관심을 갖어야 할 큰 문제들엔 등한히 하기가 쉽다.

계란값이나 닭고기값이 폭락하였을 때 소비홍보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쪽에 수매비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양계인 대부분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와서는 많이 달라져가고 있다. 과거에는 불황이 오면 무화인들이 모여 입추조절을 결의하곤 했는데 몇번 해보고 나서 이제는 입추 조절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되었다. 브로일러 수매비축도 전갈으면 빨리 수매비축을 하자고 할 것이지만 이즈음엔 비축 찬성파와 반대파가 수적으로 백중하여 결론을 얻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

이렇게 당면한 눈에 보이는 문제도 국민적합



지난 것이고 자조금제도가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가지 제도는 함께 보완적 성격으로 병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축산진흥기금과 자조금제도의 비교 설명과 최근 축산진흥기금과 농안사업기금의 통합 기사가 보도되어 기금에 대한 생산자의 불신도 씻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에 많은 좋은 제도들이 풍성하게 논의만 되고 아무런 결실을 못맺은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다. 왜 결실을 맺지 못하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선각자의 말을 인용하여 끝을 맺고자 한다. '아무리 꽃이 만발하여도 국민적 합의에 의한 수정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질 수 없다.'

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관심밖에 있는 큰문제들, 관심을 갖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 집약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업계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부분적으로 댄질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계열화 생산유통이라고 하였다.

선각자들의 주장이 대개 외로운 것처럼 계열화도 계란이나 닭고기값이 폭락했다거나 도계법(축산물 위생처리법)발동으로 유통이 막힌다는가 해서 이를 해결하자는 주장과는 호응도가 판이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정부측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점 시책으로 채택하였고 몇몇 업체가 약간의 정부 지원을 받아 계열화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금년에와서는 자조금(Check off System) 제도가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 제도 없이는 양계산업의 발전이 어렵다는 주장이 이번 양계강습회에서도 나왔다.

최근 양계업자들 중에 이제 계열화는 한세대

## 양계업등록

67.6%

축산법에 의하여 만수이상 규모의 육계농장과 3만수이상 규모의 채란계 농장에 대한등록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해 이 법이 통과될 때부터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양축가들이 등록을 하는 목적이나 등록 함으로써 업계 발전에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등록을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산란계의 경우 74.2% 육계는 64.6% 밖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이 법이 종계업의 등록과 부화업의 허가제처

럼 등록업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초 일정규모 이상을 등록시키고 필요시 생산조절을 명해서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뜻이 있었으나 실제 부화업에 대해서도 생산조절을 명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가격안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주기를 바라는 업자들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더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등록제도가 계산물 가격안정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양축가 입장에서는 등록하는 번거로움만 더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제 양계산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시 도 별	산 란		육 용	
	전 수	수 수	전 수	수 수
경 기	79 ( 76)	3,969,000 (3,875,378)	119 (148)	2,152,000 (2,530,140)
강 원	( 2)	( 513,800)	5 ( 14)	99,000 ( 262,546)
충 북	( 1)	( 57,000)	1 ( 8)	20,000 ( 103,450)
충 남	7 ( 1)	293,700 ( 50,000)	14 ( 33)	250,000 ( 572,000)
전 북	( 6)	293,700 ( 518,200)	5 ( 11)	73,000 ( 197,000)
전 남	( 2)	( 106,000)	6 ( 5)	155,000 ( 137,000)
경 북	3 ( 13)	127,000 (1,417,680)	5 ( 20)	102,000 ( 603,500)
경 남	( 13)	( 772,944)	16 ( 19)	289,550 ( 506,000)
제 주		( )	1	14,000 ( 506,959)
서 울	( 1)	( 45,140)		
부 산	( 2)	( 570,550)		( 69,130)
인 천	( 3)	(1,210,200)		
대 구				
등록대상 (85.3월현재)	89 (120)	4,389,700 (9,137,792)	172 (263)	3,154,550 (4,982,675)
	74.2%		64.6%	

## 닭고기·계란 소비는 양계가족부터